

#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3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7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인권침해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내용 중 ‘인권침해’는 현행 법률상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해당 용어를 사용한 제목과 조문을 통일적으로 수정함.
- 현장실습 산업체의 위반내용 확인 및 복교조치의 주체를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에 규정된 ‘인권’을 ‘노동인권’으로 각각 수정하고(안 제15조), 일부 규정을 동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정비함(안 제15조제5항).
-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는 주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‘교육감과 학교장’에서 ‘학교장’으로 함(안 제15조제6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)” 을 “(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“인권침해” 를 각각 “노동인권침해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인권침해 등에” 를 “노동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교육감과 학교장” 을 “학교장” 으로, “인권침해” 를 “노동인권침해” 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교원, 학부모, 학생,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,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</p>	<p>제9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----<u>학생, 학교전담노무</u> <u>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9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5조(<u>학생의 안전보장</u>)</p> <p>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<u>안전사고</u>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<u>산업재해 또는 신체적·정신적</u>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</p>	<p>제15조(<u>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</u>) ① ----- - <u>인권침해 또는 안전사고</u>----- -- 등 필요한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--- <u>산업재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인권침해</u> 등-----</p>	<p>제15조(<u>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</u>) ① - -- <u>노동인권침해 또는 안전사고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산업재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노동인권침해</u> 등 -----</p>

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 피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----  
-----.

④ (생 략)

⑤ -----  
-----  
----- 산업재해, 신체 적·정신적 피해, 인권 침해 등----- 하고,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---.

⑥ 교육감과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,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④ (개정안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산업재해, 신체 적·정신적 피해, 노동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 기 위해-----  
-----.

⑥ 학교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노동인권침해-----  
-----  
-----.

##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학생”을 “학생, 학교전담노무사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학생의 안전보장)”을 “(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보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전사고”를 “노동인권침해 또는 안전사고”로, “및”을 “등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산업재해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위협이”를 “산업재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노동인권침해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안전과 보건의”를 “산업재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노동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하고,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, 노동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  정      안
<p>제9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위원회는 교원, 학부모, <u>학생</u>,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계 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,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</p>	<p>제9조(현장실습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학생, 학교 전담노무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<u>학생의 안전보장</u>)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<u>안전사고</u>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   략)</p> <p>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<u>산업 재해 또는 신체적·정신적 위험</u>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   략)</p> <p>⑤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<u>안전과 보건</u>에 필요한 조치를 <u>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15조(<u>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</u>) ① -----<u>노동인권 침해 또는 안전사고</u>-----<u>등 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산업재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노동인권 침해 등</u>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산업재해, 신체적·정신적 피해, 노동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</u> --- <u>하고,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</u> 한다.</p>

<신 설>

⑥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, 노동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.